

AA15896-00100000011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방화 앵글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방화앵글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산업용 혼합물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해당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주)아이캡코리아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47-25
긴급전화번호	02-333-8307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해당없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해당없음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해당없음
대응	해당없음
저장	해당없음
폐기	해당없음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보건	0
화재	0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팽창흑연(그래파이트) 분말	sulphuric acid, compound with graphite	12777-87-6	45~50
실리콘	실로산과 실리콘, 다이메틸, 메틸 비닐, 비닐 군-터미네이티드(SILOXANES AND SILICONES, ...	68083-18-1	55~6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칼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해당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화학물질이 관련된 대형화재 진압시 개인호흡기와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해야함
화재진압시 예방조치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해당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해당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기계적으로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해당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해당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해당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해당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경구, 눈·피부	해당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해당없음
경구	해당없음
경피	해당없음
흡입	해당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해당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해당없음
호흡기과민성	해당없음
피부과민성	해당없음
발암성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고용노동부고시	해당없음
IARC	해당없음
OSHA	해당없음
ACGIH	해당없음
NTP	해당없음
EU CLP	해당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생식독성	해당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해당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해당없음
흡인유해성	해당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갑각류, 조류	해당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해당없음
분해성	해당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해당없음
생분해성	(해당없음)
라. 토양이동성	해당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해당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최대치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십시오. EU waste catalogue : 17 02 03 플라스틱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12-14호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법규 현황 등을 고려 작성함 본 자료는 SIDS, EPISUITE, Corporate Solution From Thomson Micromedex(http://csi.micromedex.com),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작성일	2024-12-01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3 회
최종 개정일자	2026-01-05
라. 기타	이 자료는 사용자의 건강, 안전, 환경을 위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임.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